

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57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2.

발 의 자 : 유상범 · 조수진 · 박형수

박수영 · 지성호 · 김도읍

송석준 · 김상훈 · 엄태영

전주혜 · 조정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
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 · 사회적 나이 기준은 ‘만 나이’가 원칙임을
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48호, 2022.
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됨에 따라,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
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‘연 나이’ 기준을
‘만 나이’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
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성폭력
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9세 미만의 미성년자(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
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)”를 “미성년자”로, “자가”를 “미성
년자가”로 한다.

제2조(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아동 · 청소년
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아동 · 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신고의무) ① <u>19세 미만의 미성년자(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)</u>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· 지원을 받는 <u>자가</u>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9조까지, 「형법」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신고의무) ① <u>미성년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성년자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아동 · 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다만,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.</p> <p>2. ~ 9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아동 · 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